

2015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

2015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ICT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팀)를 발굴하여 사업 계획 수립부터 창업교육, 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창업 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역량있는 청년CEO 및 전문기업 육성

□ 모집분야

- 앱·콘텐츠·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 * (앱) 모바일 앱, 웹 앱 등 응용프로그램 분야(제조·서비스 융복합 앱 포함)
 - * (콘텐츠)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창의력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
 - * (SW융합) 제조·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 SW 분야

□ 모집규모 : 200명(팀) 내외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주관기관		선발인원
수도권	(주)옴니텔	56명(팀) 내외
대구·경북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80명(팀) 내외
동남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32명(팀) 내외
충청·호남권	대전문화산업진흥원	32명(팀) 내외

*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지역제한은 없으나 중복 신청은 불가

◆ 만 39세 이하(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사업신청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① 만 39세 이하(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39세 이하)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검직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만 39세 이하(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창업 3년 이내(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체제 기업 대표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단, '09년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실험실 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지원사업(지식, 제조),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구원 특화형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사업,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창업기획사,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 * 위 사업과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함.

-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일부제한이 있음
- * '스마트창업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업작터)' 사업에서 자금을 수혜 받은 자(기업)는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에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기 수혜자금을 차감하고 지원

☞ **중소기업청 이외의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 *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이 가능(완료일이 '15.5.15이전인 경우)
단, 수행을 완료한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수행을 완료한 사업의 기 수혜자금을 차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지원규모

- 창업자금 지원 : 4천만원~1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청년창업자별 차등 지급
 - 청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부담)

【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 정부지원금이 100,000천원인 경우
 - 총사업비 : 142,858천원 (100,000천원/0.7)
 - 청년창업자 부담 현금 : 14,286천원 (142,858천원*0.1)
 - 청년창업자 부담 현물 : 28,572천원 (142,858천원-100,000천원-14,286천원)
- * 백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부담

* 현물 부담은 사업 참여 청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 청년창업자가 보유한 개발 관련 기자재로 계상 가능

□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창업 및 사업화를 일괄 지원(36주 과정)

*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개발·마케팅 전문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지원 등

입교	2주	34주		졸업후	
 앱 콘텐츠 SW융합	 사업계획 수립	 창업 교육	 개발·서비스구현	 마케팅 사업화	 후속지원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사업계획 수립	▶ 경영실무 ▶ 창업의지	▶ 멘토링·전문교육 ▶ 네트워크 ▶ 협업지원	▶ 마케팅 ▶ 기업제휴	▶ 투자유치 ▶ 해외진출
	1단계평가 (20%내외 탈락)	2단계평가(18주후) 상위팀 40% 내외 추가자금 지원			
	공간 및 자금지원(4천만원~1억원)				

- ① **사업계획 수립(2주)** : 사업계획서 작성법 집합교육(2박 3일이상) 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
 -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계획 평가 후 하위 20% 내외 청년창업자 탈락(퇴교)
- ② **창업교육** : 창업 실무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집합교육
 - 수익모델 창출, 법인설립, 재무, 회계 등 경영 실무 및 기업가정신 강화 교육(40시간 이상)
- ③ **개발 및 서비스 구현** : 분야별 전문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 청년창업자 전용 개발공간(팀당 10㎡ 내외), 개발자금, 창업활동비 제공
 - * 청년창업자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4천만원~1억원까지 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 분야별 전문 멘토링(15회 이상) 지원
 - 개발 및 마케팅 교육(40시간 이상)
 - 창업자·투자자·멘토와의 네트워크 및 협업프로그램 지원(4회이상)
 -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중단(퇴교)
- ④ **마케팅 사업화** :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사업화
 - 마케팅·IR 등 관련 세미나 개최, 마케팅 지원기업 제휴 및 VC 투자 연계 기회 제공
 - 사업화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
- ⑤ **투자 유치 및 글로벌화** :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보육 공간 제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4

평가 및 선발

□ 선발절차

- 서류검토 (결격사유 확인) →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총 선발인원의 200% 내외 선발) → 면접심사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방법

- ① 서류심사(평가위원회) :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추천

< 서면평가 항목 >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창업의지	창업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사전준비성 청년창업자(팀원)의 전문성	40점 만점
창업아이템 우수성	창업아이템(기능, 특징 등)의 우수성 기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40점 만점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20점 만점

- ② 면접심사(평가위원회) : 분과별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를 통해 입교대상자 선발

< 대면평가 항목 >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창업의지	청년창업자의 열정 및 도전정신 사업분야 관련 시장 (트렌드)의 이해도 창업기업의 목표와 비전의 명확성	30점 만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아이템 개발계획의 구체성 창업아이템 상용화 가능성 사업화 전략의 독창성	45점 만점
성장가능성	시장 진출 및 수익 창출 가능성 창업 후 성장계획의 실현가능성	25점 만점

③ 입교자 선정(사업운영위원회) :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모집규모,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입교자(팀) 선정(예비창업자 60%, 기창업자 40%)

* 창업진흥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처간 협업으로 별도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 주관기관별 선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입교 대상으로 추천 가능

서류심사 가점사항 (최대 2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주최 대회 포함)(0.5점)
- 여성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장애인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0.5점)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창업캠프 제외) 이수자(0.5점)
-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굴 우수기업(1점)

□ 창업자금 배정

○ 선정된 입교자는 2주간의 사업계획수립과정 참여 후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 내외의 청년창업자 탈락

* 멘토평가 평점(30점) +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평가 평점(70점)을 합산

○ 사업계획수립과정을 통과한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자부담금 규모를 고려하여 4천만원* 이내의 정부지원금 일괄 배정

○ 입교일로부터 18주 경과 후 중간평가를 통해 상위 40% 내외의 우수창업자에게는 6천만원 이내의 정부지원금 추가(차등) 배정

□ 협 약

- 사업계획평가 후 청년창업자는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이내에 현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장은 청년창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자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장은 청년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및 환수 등을 조치함
 - 사업비의 용도의 사용,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청년창업자가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스마트벤처창업학교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 천재지변, 청년창업자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5. 4. 7(화) ~ 4. 27(월) 17:00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창업넷 가입 및 사업신청 절차'를 미리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신청 마감일시 이전까지 수정이 가능)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창업넷 접속 → ②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③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④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추가서류(가점 증빙 등) 등

-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http://www.startup.go.kr>) 및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에 게시
-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이메일, SMS 등) 통보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신청·접수(창업넷)	'15. 4. 7 ~ 4. 27
서류심사(평가위원회)	'15. 5. 6 ~ 8
면접심사(평가위원회)	'15. 5. 13 ~ 15
최종선정(사업운영위원회)	'15. 5. 18 ~ 19
선정결과 통보	'15. 5. 20
입교	'15. 6. 1

- * 위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청년창업자는 협약 종료일 전까지 지원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예비창업팀의 경우 법인등록) 등의 창업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 특히, 앱 개발의 경우 앱 오픈마켓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단 퍼블리셔, 투자자와의 계약 등의 사유로 공개시기가 제한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예비창업팀의 경우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한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청년창업자는 SW융합, 콘텐츠, 앱 등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후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운영지침에 규정된 여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수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평가 후 하위 20% 내외,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탈락(퇴교) 조치
 - * 탈락(퇴교)시 정부지원금 지원은 중단되며, 사안에 따라 기지급된 정부 지원금도 회수 가능
- 최종평가지 실패 판정된 청년창업자도 사안에 따라 기지급된 정부 지원금 회수 가능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지침·기준 및 창업 학교별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 창업자에게 있음

구 분		전 화	주 소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주)옵니텔	070-7605-6193, 611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3층
	경북대학교	053-282-5000~5005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7
	울산대학교	052-247-8062, 8063	울산 남구 옥현로 129 울산 벤처빌딩
	대전문화산업 진흥원	042-862-9246, 9247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042-480-4397, 4396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창업넷 시스템 이용 문의	042-480-4363	캐피탈타워 5층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사업계획서

I. 신청과제 현황

신청과제명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어플리케이션(앱),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input type="checkbox"/> SW 융합
입교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input type="checkbox"/> 대구·경북권 <input type="checkbox"/> 충청·호남권 <input type="checkbox"/> 동남권
신청 형태	<input type="checkbox"/> 예비창업자 (□개인 / □팀 (00명)), <input type="checkbox"/> 창업자 (□개인 / □법인)

II. 신청자 현황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번호	
E - mail		소 속	
거주지 주소			

II-1. 예비창업팀(추가 작성)

팀원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폰 번호	
	소 속		거주지 주소	
팀원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폰 번호	
	소 속		거주지 주소	
팀원 3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폰 번호	
	소 속		거주지 주소	

II-2. 창업기업(추가 작성)

기업명		창업일(법인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창업아이템		종 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직원수(신청일기준)	명
주 소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본 계획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서명)

1. 창업자의 전문성

1-1) 창업배경 ☞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

1-2) 보유역량 ☞ 창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은 무엇입니까?

.....

2.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2-1) 기술의 구체성 ☞ 어떤 제품(서비스)을 만들 계획입니까? 만들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그림 또는 표 활용가능)

.....

2-2) 기술의 차별성 ☞ 만들고자 하는 제품(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 (업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

2-3) 기술의 독창성 ☞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의 유사제품(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인 우위성은 무엇입니까?

.....

2-3) 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제품(서비스) 제작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며, 어떻게 제작할 계획입니까?

.....

3.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성)

3-1) 홍보 및 판매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할 계획입니까? 누가 이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매출처는 어디입니까? 구매자에게 제품(서비스)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존 제품(서비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판매 전략은 무엇입니까?

.....

3-2) 수익성

- ☞ 이 제품(서비스)을 통하여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까? 제품(서비스)의 수익률 책정 및 향후 수익률 예측, 시장(고객) 수요대비 공급(생산) 계획 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기재하세요.

.....

4. 사업 추진일정

- ☞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시장조사, 시제품개발,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소요자금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5. 자금 조달 계획

- ☞ 현재 창업자금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기재하세요. 창업에 필요한 총 자금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창업자금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밝히고,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면 조달계획을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자기자본 및 국가(금융) 기관을 통한 융자 및 VC 등 투자자를 통한 투자금 조달계획 등)

.....

※ 이 페이지는 삭제 후 제출(항목별로 다음페이지부터 붙임요망)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대 상	목 록		비 고
공 통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필수 가점 관련증빙 서류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중인 것은 제외)	해당자만 제출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실적증명원 또는 상장사본자(지방청 주최대회 포함)	
		여성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	
		장애인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상장 사본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증명원 또는 이수증 사본	
		창조경제타운(미래창조과학부)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굴 우수기업에 대한 각 기관 확인서 또는 추천서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12.1.1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선정시 제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 통	기타 참고자료	본인의 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설계도 등	필요시 제출

* 증빙서류가 누락 제출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붙임>

가점관련 증빙서류(공통)

가점관련 증빙서류
이미지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용)

이미지 삽입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사실증명원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용)**

이미지 삽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사업자용)

이미지 삽입

기타 참고자료(공통)

본인의 아이টে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설계도 등을 첨부가능
(필요시 첨부)